㈜지누스

ESG 경영위원회

ZINUS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지누스(이하 “회사” 라고 한다)의 ESG 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고 한다)의 구성, 권한 및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 해 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 (직무와 권한)

1.위원회는 본 규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의 및 보고사항에 대 한 심사 및 승인 권한을 가진다.

2. 위원회는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해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 4 조 (위원의 의무)

1.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 이라 한다)은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위원은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이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2 장 구 성

제 5 조 (구성)

1.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2.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의 [3 분의 2]이상은 사외이사로 한다.
3. 위원의 임기는 동 위원의 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4. 위원회 위원이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 2 항의 위원 수에 미달하게 될 때에는 이사회에서 이를 선임하고,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제 2 항에 의한 구성을 결한 경우 임기의 만료· 사임 등으로 퇴임한 위원은 새로 선임된 위원이 취임할 때까지 위원으로서의 권리· 의무가 있다.

제 6 조 (위원장)

1. 위원회 위원장은 제 11 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중에 선정하여야 한다. 단, 위원회 결의로 선정이 어려운 경우, 이사회에서 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시 의장이 된다.
3.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활동내용의 요지에 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회의 위원 중 선임위원,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7 조 (해 임)

위원은 이사 총수의 [3 분의 2] 이상의 이사회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제 3 장 회 의

제 8 조 (실시 주기)

위원회는 [반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제 9 조 (소집권자)

1.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제 6 조 제 5 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2 주일] 이상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10 조 (소집절차)

1.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의일 7 일전까지 각 위원에 각자에 대하여 개최시기, 장소 및 안건을 문서,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 1 항의 소집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제 11 조 (결의방법)

1.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한다.
2.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3.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위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12 조 (부의 및 보고사항)

1.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요 친환경 관련 투자계획에 관한사항
 (2) 주요 CSR(사회공헌) 활동 계획에 관한 사항
 (3) 안전, 보건, 환경 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지배구조헌장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요 친환경 관련 경영 활동 결과에 관한 사항
 (2) 주요 CSR(사회공헌) 활동 결과에 관한 사항
 (3) 상생경영, 지역협력, 사회적 기업 지원 활동에 관한 사항
 (4) ESG 리스크 관리 지침 제·개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ESG 관련 업무집행 과정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부의 또는 보고 할 수 있다.

제 13 조 (관계인의 출석 등)

1.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구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4 조 (의사록)

1.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 4 장 보 칙

제 15 조 (통지)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이사회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6 조 (지원부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결의사항에 대한 관련자료 수집, 기타 위원회의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회사에 위원회의 지원부서를 둘 수 있다.

제 17 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 년 11 월 7 일부터 시행한다.